

## 공연음란 범죄 피해자의 실태조사

김 윤 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공연음란 범죄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거의 하지 않는 실정이다. 경찰에서 파악된 공연음란 범죄 통계로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에게 직접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작성케 하여 피해 상황의 특성, 피해 당시의 경험, 범죄자의 범행 수법 등을 분석하여 정확한 공연음란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범죄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험자는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대학과 일반인을 상대로 공연음란 피해를 입은 여성 216명을 상대로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연음란에 대한 피해 경험에 대하여 정신적 상처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결과는 '컸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공연음란죄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음란 범죄의 발생 장소는 길거리가 가장 많았지만, 학교근처와 놀이터를 합하면 길거리보다 높게 나타났고, 계절별 피해 결과는 여름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간별 피해 결과는 오후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 피해 결과는 10대가 가장 많았고, 혼자 있었을 때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고, 범행 발생 당시 상황을 조사한 결과는 보행 중 가장 많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가에 대한 결과는 신고가 된 경우가 5.6%였다. 김윤식·박지선(2011)의 연구에서는 발생시간에서 저녁이나 야간에 주로 발생하며, 노상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20대 이하인 경우가 전체 공연음란 범죄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였다. 지난 김윤식·박지선(2011)의 연구와 본고의 연구와 다른 점은 발생 장소에서 학교근처 및 놀이터에서 발생이 높았고, 발생시간은 저녁이 더 많았고, 혼자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고, 10대가 피해를 더 입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0대들이 등하교 시간에 학교 근처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신고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점이 굉장히 우려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공연음란 범죄, 피해자 특성, 범행 수법, 범죄 예방

\* 교신저자 : 김윤식,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박사과정. o0b24@naver.com

공연음란 범죄는 경찰에서 가장 많이 인지되는 성범죄이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공연음란이 전체 성범죄의 약 3분의 1(Evans, 1970; Rooth, 1974), 영국에서는 약 4분의 1(Feldman, 1977)을 차지한다. 공연음란 범죄는 일반적인 성폭력 관련 범죄에 특히 강간 및 강제추행에 비해 그 심각성이 크게 경시되거나 오히려 희화화되는 경향이 있다(김윤식·박지선, 2011). 그리고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입건이 되어 구속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Rice et al., 2001). 공연음란 범죄자는 보통 잘 모르는 상대에 대하여 노출 행동을 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는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인 경우가 많다. 사실상 많은 공연음란 범죄자들은 예측이 가능하고 신고만 하면 쉽게 검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연구 및 실태 조사가 없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의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경찰통계를 중심으로 공연음란 범죄 총 249건을 대상으로 범죄 발생 특성, 범죄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피해자 특성, 범행 수법이라는 네 가지 범주를 통해 그 실태를 조사한 것이 처음이다(김윤식·박지선, 2011).

공연음란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는 법률적 의미에서의 정의이고, 둘째는 의학적 의미에서의 정의이다. 첫째, 법률적 의미에서의 정의는 공연음란죄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245조)”로, 공연음란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는 내용으로 법률적인 관례 등을 살펴보면 공공장소에서 특정 대상에게 성기를 노출시킨다든지, 어린 여아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는 등의 행동은 건전한 성도덕을 해칠 뿐더러 공공의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필요로 할 때 법 적용이 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둘째, 의학적 정의는 DSM-IV 기준의 변태 성욕장애 종류에서 노출증(exhibition)은 예기치 않은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강한 성적 흥분이나 욕구, 행위, 공상들이 반복되며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성기를 외부로 노출시키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학교나 놀이터에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마치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다든지, 공공장소에서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 술에 만취하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 사람이 지나갈 때 일부러 차량 안에서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이 있다.

공연음란 범죄에 대하여 또한 심각한 문제는 이 범죄의 죄명을 들었을 때, 공연음란이란 범죄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음란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이 바뀐 예를 들면 여성부가 출범하고 성매매구조에 있는 여성들의 처참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대체할 법안이 필요해졌다. 이 법 하에서는 성매매 구조에 있는 여성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전개하는데 한계가 있고 외국인여성의 성매매처럼 새롭게 출현하는 성매매 유형에 대응하는데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2004년 9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윤락행

위 등 방지법' 시행규칙은 폐지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연음란 범죄에 대해서도 대체할 죄명과 강화된 법률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2010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인여성 100명당 지난 1년간 '심각한 성추행(성기접촉, 애무 등의 강제 추행)'은 20.6명, '가벼운 성추행(고의로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는 32.8명으로 조사 됐다. 성희롱 피해는 지난 1년간 24.4명, 음란전화·문자·메일 피해는 27.1명, 성기노출 목적 피해는 27.5명으로 응답했다. 이번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강간·강간미수'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12.3%였고 '심한 성추행' 피해자의 5.7%, '가벼운 성추행'의 4.1%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자 아동·청소년의 강간미수 피해율은 0.9%로 일반 여성의 강간미수 피해율 0.4%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여자 아동·청소년의 가벼운 성추행 피해율은 13.6%(일반 성인 여성 3.3%), 성희롱 피해율은 9.7%(일반 성인 여성 2.4%)로 일반 성인 여성에 비해 4배 높은 피해율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0).

공연음란 범죄는 경찰통계에서도 피해자의 대부분이 10대와 20대가 약 80%정도 보고되었다(김윤식·박지선 2011). '2010년 전국 성범죄 실태'의 여성가족부 연구에서도 아동·청소년들의 경미한 성범죄에 대한 신고가 더욱 적다고 발표가 되었다. 그렇다면 경찰 통계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극소수 일 것이다. 실제 공연음란 피해자는 신고된 것 보다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확인하여 정확한 피해 실태를 알아보는 것이 시

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공연음란에 대한 실태와 피해정도를 설문으로 조사연구 함으로써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강구해 볼 것이다.

### 공연음란의 선행연구

공연음란과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2가지가 있다. 법률제도를 통한 공연음란의 범죄 기록과 피해자들의 조사이다. 우리나라에서 법률제도를 통한 공연음란의 범죄 기록에 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있었으나(김윤식·박지선, 2011), 경찰에 신고되거나 입건이 되는 경우는 매우 적어서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여 공연음란범죄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얻는 것이 범죄예방 및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Hendrix & Meryer(1976)의 연구에서 공연음란 범죄자가 경찰에 입건 및 정신치료도 받지 않고 약 600회에서 700회까지 피해자들에게 노출을 보고한 경우가 있었다. 공연음란 범죄의 각국의 경찰에 대한 적은 신고여부를 나타내는 연구들은 다음에서도 볼 수 있다. 영국의 연구에서는 약 18% 정도가 신고가 되었고(Gittleson, Eacott, & Mehta, 1978), 콰테말라의 연구에서는 약 15% 정도가 신고 되었으며(Rhoads & Buries, 1981), 미국과 홍콩의 연구에서는 각 12%와 0% 정도가 신고 되었다(cox, Tsang, & Lee, 1982). 106명의 캐나다 대학생들 상대로 한 연구에서는 16% 정도의 경우가 14세 이전에 노출의 대상이 되었다(Herold, Mantle, & Vemitis 1979). 영국의 간호사를 상대로 한 연구에서는 100명 중 44%가 노출을 경험하였다(Gittleson, Eacott, & Mehta, 1978). 홍콩

의 대학생을 샘플로 한 연구에서는 126명 중 36%가 노출을 경험하였다(Cox, Tsang, & Lee, 1982).

미국의 여자 대학생 총 846명을 대상으로 공연음란 범죄 관련 피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 중 33%가 노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처음 피해를 경험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10세에서 16세 사이가 가장 많은 43%의 비율을 차지했다(Cox, 1988). 다른 연구에서는 16세 이전에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 비율이 57.1%로 가장 많았다(Riordan, 1999).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대부분이 낯선 사람으로 64%였고, 서로 알고 있던 사람인 경우는 36%였다(Cox, 1988).

범행 발생 장소는 범행의 53.3%가 거리에서 발생했으며, 13.3%가 공원, 8.9%가 농장에서 발생하는 등 대부분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Riordan, 1999).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혼자 있었던 경우는 35.6%를 차지한 반면, 다른 사람(대부분 여성)과 함께 있었던 경우는 64.4%였고, 이들 피해자들은 쇼핑 중이거나 버스를 기다리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iordan, 1999).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공연음란 경찰통계를 바탕으로 하여 발생한 사건 249건을 대상으로 범죄 발생 특성, 범죄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피해자 특성, 범행 수범이라는 네 가지 범주로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여름(6-8월)에 발생하는 사건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저녁이나 야간에 주로 발생하며, 노상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범죄자가 절대적으로 많으며 거의 모두 단독범이고, 범행 당시 대부분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범죄자의 직

업은 회사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직, 노동, 종업원 등의 순서였다. 한편 피해자는 대부분 여자이거나 여성이 함께 피해를 입은 사건이 많았고, 피해자가 20대 이하인 경우가 전체 공연음란 범죄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였다. 또한 범죄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김윤식·박지선, 2011).

공연음란 범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충격을 받거나 공포를 느끼는 등 상당수가 강렬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여 정신적 충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iordan, 1999). 그러나 이에 비해 이러한 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Cox, 1988).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놀림거리로 볼 것을 우려하거나 경찰에 의해 사소한 것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Cox, 1988; Riordan, 1999).

본 연구에서는 공연음란 범죄가 신고되거나 경찰에 입건이 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졌다. 그리하여 경찰 통계로는 공연음란 범죄의 실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경찰 통계를 가지고 최초로 공연음란 범죄를 조사한 경우는 있으나(김윤식·박지선 2011),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조사를 한 경우는 없었다. 본 연구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연음란 피해 경험, 최초의 피해 일시, 범죄자의 범행 수범, 범행동기 및 특징 등을 분석할 것이다.

공연음란 범죄의 문제는 신고한 비율이 저조하여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없다는 것과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피해 경험이 정신적으로 매우 깊은 상처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사법기관에서는 공연음란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반인들은 죄명을 듣고 음란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실태를 직접 파악하여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와 사법기관에서 공연음란 범죄에 효과적인 예방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연음란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대상으로 216명(연령  $M = 21.68$ ,  $SD = 4.06$ )이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혼인 관계를 물어보았을 때 216명 중 미혼이 206명(95.4%)이고, 결혼한 사람이 10명(4.7%)이었다. 최종학력은 대학재학 중이 170명(78.7%)이고, 고등학교 졸업은 13명(6%)이고, 4년제 대학교 졸업은 12명(5.6%)이고, 기타 18명(9.7%)이었다. 직업은 학생이 194명(89.8%)이고, 주부가 5명(2.3%), 사무직 3명(1.4%), 기타 14명(6.5%)이었다.

### 분석 내용(연구 질문)

공연음란 범죄의 발생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주요 변인들은 크게 공연음란 죄에 대한 인식, 공연음란에 대한 피해 경험, 범죄자의 특성, 범행수법, 범행동기, 피해자 사회 인구학적 특성, 여섯 가지의 범주로 구분된다. 우선 공연음란

범죄에 대한 인식에서는 공연음란에 대한 피해경험 및 정신적 상처와 공연음란의 인식정도 및 인식을 하게 된 경위로 구성되며, 공연음란에 대한 피해경험은 경험횟수, 장소, 시간, 경찰에 신고에 대하여 구성되었고, 범죄자 특성은 성별, 나이, 술을 마셨는지, 범죄자수로 구성되었고, 범행수법은 자위행위, 차량이용, 얼굴을 가림, 피해자 폭행, 욕설로 구성되었고, 범행동기는 동기가 무엇인지, 아는 사이인지, 노출정도, 특정인에게 피해를 입혔는가가 구성되었고, 인구사회학적특성은 성별, 나이, 학력, 혼인 등으로 구분하였다.

### 분석결과

#### 공연음란 죄에 대한 피해경험에 대한 정신적 피해

전생애 걸쳐 한번이라도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성적 신체 노출한 것을 본 것에 대한 경험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성적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위 문항에서 예라고 대답하였다면] 피해를 당할 당시 정신적 상처는 어느 정도였습니까?’라고 물어본 결과 정신적 상처의 결과는 노출경험이 있는 피해자 중에 4번 ‘컸다’에 응답한 피해자가 83명(28%)으로 가장 많았고, 3번 ‘보통 이었다’는 49명(16.7%), 2번 ‘별로 크지 않았다’는 28명(9.6%), 5번 ‘매우 컸다’는 26명(8.9%), 1번 ‘전혀 없었다.’는 5명(1.7%)으로 나타났다.

#### 공연음란죄에 대한 인식

공연음란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 ‘귀하는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에 대한 피해자의 응답은 1번 ‘예’가 85

명(39.4%)이었고, 2번 ‘아니요’가 130명(60.2%)이었다. ‘귀하는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중복응답가능)’라는 질문에는 2번 ‘TV나 라디오’가 44명(30.1%)으로 가장 많았고, 5번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가 37명(25.3%), 6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가 22명(15.1%), ‘친구/가족/직장동료/이웃’이 9명(6.2%)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귀하께서 알고 계신 **‘공연음란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중복응답가능)’에 대한 물음에 ‘포옹이나 등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은 공연음란이다.’에서 ‘아니요’로 정확히 대답한 피해자는 79명(36.6%)이고, ‘성적 내용을 묘사하는 야한 농담(음담패설) 등은 공연음란이다.’에서 ‘아니요’로 정확히 대답한 피해자는 37명(17.1%), ‘음란한(듣기에 불쾌한) 내용의 전화통화는 공연음란이다.’에서 ‘아니요’라고 정확히 대답한 피해자는 35명(16.2%),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는 공연음란이다.’에서 ‘아니요’라고 정확히 대답한 피해자는 16명(7.4%)이었고,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는 공연음란이다.’에 ‘예’라고 정확히 대답한 피해자는 152명(70.4%)이었다. 피험자들은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성추행, 음담패설, 음란전화, 음화반포 등과 혼동을 하고 있고, 정확하게 공연음란 범죄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바꾼 예와 같이 공연음란 죄에 대해서도 죄명에 대한 대책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공연음란 피해 경험

공연음란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는가에 대한

물음 ‘귀하께서는 공연음란 피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결과는 <표 1 참조> 2번 ‘한 번 있다’가 125명(57.9%)으로 가장 많았고, 3번 ‘두 번 있다’는 46명(21.3%), 4번 ‘세 번 이상’은 45명(20.8%)으로 나타났다.

‘귀하께서는 공연음란 피해 경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중복응답가능)’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결과 <표 1 참조> 1번 ‘길거리에서 의도적으로 성기를 노출시키는 사람을 보았다’로 응답한 피해자가 155명(29%)으로 가장 많았고, 2번 ‘차량 안에서 성기를 꺼내 놓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가 66명(20.6%), 3번 ‘자신을 상대로 성기를 꺼내 놓고 자위행위 하는 것을 보았다’가 39명(12.2%), 6번 ‘술에 만취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가 22명(6.9%), 7번 ‘기타’가 20명(6.3%), 5번 ‘화가 나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4명(1.3%)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공연 장소에 대한 물음 ‘공연음란 피해를 당하신 구체적 장소는 어디입니까?’에 대한 1번 ‘길거리’에 응답한 피해자가 100명(38.6%)으로 가장 많고, 2번 ‘학교근처’는 90명(34.7%)으로 나타났고, 4번 ‘공원 및 놀이터’에 30명(11.6%)이며, 5번 ‘건물 안 복도 및 계단’이 8명(3.1%)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계절별 피해 결과의 물음으로 ‘공연음란 피해를 경험하신 시기가 언제입니까?’ <표 2 참조>는 여름(6-8월)으로 응답한 피해자가 50명(38.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을(9-11월)에는 42명(32.8%), 봄(3-5월)에는 24명(18.3%), 겨울(12-2월) 14명(10.7%)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간별 피해 결과의 물음으로 ‘몇 시경으로 기억하십니까?’는 오후(12-16시)에 응답한 피해자가 64명(31.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오

표 1. 공연음란 피해 수, 피해 경험, 발생 장소

피해수	구분	빈도 (%)
없다		0
한 번 있다		125(57.9)
두 번 있다		46(21.3)
세 번 이상		45(20.8)
<b>합계</b>		<b>216(100)</b>
피해 경험	구분	빈도 (%)
길거리에서 노출		155(48.4)
차량에서 노출		66(20.6)
자신 대상으로 자위행위		39(12.2)
성기노출 후 따라다님		14(4.4)
화가 나서 노출		4(1.3)
술에 만취되어 노출		22(6.9)
기타		20(6.3)
복수응답	<b>합계</b>	<b>320(100)</b>
발생 장소	구분	빈도 (%)
길거리		100(38.6)
학교 근처		90(34.7)
대중교통안		13(5.0)
공원, 놀이터		30(11.6)
건물 안 복도 및 계단		8(3.1)
영업장내		0
기타		20(6.3)
복수응답	<b>합계</b>	<b>259(100)</b>

전(08-12시)에 47명(23%), 저녁(16-20시)에 31명(15.2%), 아침(04-08시)과 심야(20-24시)에 28명(13.7%), 새벽(00-04시)에는 6명(2.9%)으로 가장 적었다.

연령별 피해 결과의 물음으로 ‘공연음란 피해를 당할 때 귀하의 연령은 몇 살 때였습니

표 2. 계절, 시간, 연령

계절	구분	빈도 (%)
봄(3월-5월)		24(18.3)
여름(6월-8월)		50(38.2)
가을(9월-11월)		43(32.8)
겨울(12월-2월)		14(10.7)
복수응답	<b>합계</b>	<b>320(100)</b>
시간	구분	빈도 (%)
1(00-04)		6(2.9)
2(04-08)		28(13.7)
3(08-12)		47(23)
4(12-16)		64(31.4)
5(16-20)		31(15.2)
6(20-24)		28(13.7)
복수응답	<b>합계</b>	<b>204(100)</b>
연령	구분	빈도 (%)
00-10대		20(9.1)
11-20대		170(77.3)
21-30대		28(12.7)
30대 이상		2(0.9)
복수응답	<b>합계</b>	<b>220(100)</b>

까?’는 10대(11-20세)에 대답한 피해자가 170명(77.3%)로 가장 많았고, 20대(21-30세)에 28명(12.7%), (0-10세)는 20명(9.1%), 30대 이상 2명(7.2%)로 가장 적었다.

‘사건당시 귀하와 같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주변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의 물음에 대한 결과<표 3 참조>는 ‘혼자 있었다.’라고 대답한 피해자가 82명(38%)으로 가장 많았고, ‘2명’으로 대답한 사람은 45명(20.8%), ‘3명 이상’이 43명(19.9%), ‘기타’는 22명(7.5%), ‘3명’은 23명

표 3. 주변 몇 명, 어떤 일, 어떤 대응

주변 몇 명	구 분	빈도 (%)
혼자		82(38)
2명		45(20.8)
3명		23(10.6)
3명 이상		43(19.9)
기타		23(10.6)
<b>합계</b>		<b>216(100)</b>
어떤 일	구 분	빈도 (%)
보행중		132(61.1)
일하는중		2(0.9)
담화중		22(10.2)
휴식중		15(6.9)
기다리던중		19(8.8)
기타		26(12)
<b>합계</b>		<b>216(100)</b>
어떤 대응	구 분	빈도 (%)
무시하고 감		141(65.3)
보고만 있었음		20(9.3)
다른 사람의 도움 요청		22(10.2)
말로 타이름		15(6.9)
기타		26(12)

(10.6%)의 순서였다.

‘공연음란 피해를 당할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결과는 ‘보행 중’이라고 대답한 피해자가 132명(61.1%)으로 가장 많았고, ‘담화 중’이 22명(10.2%), ‘기다리던 중’이 19명(8.8%), ‘기타’가 26명(12%), ‘휴식 중’이 15명(6.9%), ‘일하던 중’이 2명(0.9%)로 가장 적었다.

‘공연음란 피해를 당할 때 어떤 대응을 하

였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결과는 ‘그냥 무시하고 갔다’로 대답한 피해자가 132명(61.1%)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기타’가 26명(12%), ‘그냥 보고만 있었다.’가 22명(10.2%), ‘소리 질러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했다’가 22명(10.2%), ‘범인을 말로써 타이렀다’는 15명(6.9%)으로 가장 적었다.

‘공연음란 피해를 당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까?’에 물음에 대한 결과는 ‘신고 안 함’이 204명(94.4%)이며, ‘신고 함’ 12명(5.6%)이다. 공연음란 범죄에 대해서는 거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성범죄 신고가 된 비율이 7%정도였는데 그 보다 약간 적은 결과이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물음에 대한 결과는 ‘신고를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63명(30.9%)으로 대답한 피해자가 가장 높은 비율이고, ‘사건이 경미해서’는 48명(22.2%), ‘기타’가 30명(14.7%)이고,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는 21명(10.3%),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는 19명(9.3%), ‘보복이 두렵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명(3.4%)으로 가장 적은 비율이었다. 공연음란 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신고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과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관계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범죄자의 특징에 대한 결과

‘귀하께서 공연음란에 대한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 성별은 무엇입니까?’에 물음에 대한 결과는 ‘남자’로 대답한 피해자가 206명(95.4%)이고, ‘여자’도 10명(4.6)있었다. 거의 남자였지만 여자도 극소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귀하께서 공연음란에 대한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외국인이었습니까?’에 대한 피해자의 대답은 ‘국내인’이 209명(96.8%)이고, ‘외국인’ 7명(3.2%)였다. 이번 결과에도 외국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께서 공연음란에 대한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는 몇 명이었습니까?’에 대한 피해자의 대답은 ‘혼자’가 205명(94.9%)이고, ‘두 명’은 4명(1.9%), ‘여러 명’은 7명(3.2%)이었다. 여러 명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술을 마시고 오줌을 싸면서 노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귀하께서 공연음란에 대한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까?’에 대하여 피해자의 대답은 ‘잘 모르겠다.’가 138명(63.9%), ‘전혀 안 마심’은 55명(25.5%), ‘약간 마심’이 12명(5.6%), ‘만취’가 11명(5.1%)이었다. 피해자들이 가까이에서 자세히 본 경우가 드물어서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지만 술을 마신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의 나이는 대략 몇 살 정도로 보였습니까?’에 대한 피해자의 응답은 ‘40대’가 73명(33.8%)으로 가장 높은 비율 이었고, ‘30대’가 60명(27.8%), ‘20대’와 ‘50대 이상’이 각각 29명(13.4%), ‘잘 모르겠다.’가 23명(10.6%), 10대 2명(0.9%)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범행수법에 대한 결과

‘귀하께서 공연음란에 대한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에 대한 피해자의 응답은 ‘예’는 131명(60.6%), ‘아니요’는 85명(39.4%)이었다. 지난번 연구결과에서 249건 중 146건(58.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경우와 비슷했다.

‘귀하께서 공연음란에 대한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차량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

었습니까?’에 대한 피해자의 응답은 ‘아니요’라는 대답은 147명(68.1%), ‘예’라는 대답은 69명(31.9%)이었다. 지난번 연구결과에서 범죄사건 총 280건(100%)중 24건(9.6%)이 있었다. 이번 결과로 볼 때 차량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고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귀하께서 공연음란에 대한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까?’에 대한 피해자의 대답은 ‘아니요’는 192명(88.9%), ‘예’는 24명(11.1%)이었다. 지난번 연구에서 피해신고 된 것 중에서도 249건 중 1건 정도로 적었다.

‘귀하께서 공연음란에 대한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귀하에게 말을 걸었습니까?’에 대한 피해자의 응답은 ‘아니요’는 161명(74.5%), ‘예’는 55명(25.5%)이었다.

‘귀하께서 공연음란에 대한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귀하에게 욕설을 하였습니까?’에 대한 피해자의 응답은 ‘아니요’는 207명(95.8%), ‘예’는 9명(4.2%)이었다.

‘귀하께서 공연음란에 대한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성적 언어를 사용하였습니까?’의 물음에 대한 피해자의 응답은 ‘아니요’는 190명(88.0%), ‘예’는 26명(12%)이었다.

‘귀하께서 공연음란에 대한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까?’에 대한 피해자의 응답은 ‘아니요’는 214명(99.1%), ‘예’는 2명(0.9%)이었다.

‘귀하께서 공연음란에 대한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따라 다녔습니까?’에 대한 피해자의 대답은 ‘아니요’는 187명(86.6%), ‘예’는 29명(13.4%)이었다.

### 범행동기 및 특징에 대한 결과

‘공연음란 범행 당시 범죄자의 음란행위의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피해자의 응답은 ‘성욕’은 152명(70.4%), ‘기타’는 46명(21.3%), ‘호기심’은 17명(7.9%), ‘화가 나서’가 1명(0.5%)이었다.

‘귀하는 공연음란을 한 가해자와 아는 사이였습니까?’에 대한 피해자의 응답은 모두 ‘아니요’라고 216명(100%)이 대답 하였다.

‘공연음란 범행 당시 범죄자의 신체 노출 정도는 어느 정도 이었습니까?’에 대한 피해자의 응답은 ‘하의를 내림’이 126명(58.3%), ‘지퍼만 열’은 68명(31.5%), ‘완전 나체’가 14명(6.5%)고 ‘기타’가 8명(3.7%),이었다.

‘음란 행위 범행 대상이 특정인이었습니까, 아니면 불특정 다수였습니까?’에 대한 피해자의 응답은 ‘불특정 다수’는 172명(79.6%), ‘특정대상자’는 44명(20.4%)이었다.

## 논의 및 결론

###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공연음란 범죄를 피해자의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의하여 피해 상황의 특성을 살펴보고, 피해 당시의 피해 경험, 범죄자의 범행 수법 등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효과적인 범죄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대학생과 일반인을 상대로 피해를 입은 216명의 범죄 피해 실태를 조사하였다.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성적 신체 노출한 것을 본 것에 대한 경험에 대하여 정신적 상처의 결과는 노출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은 정

신적으로 피해가 컸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았다. Riordan(1999)의 연구에서도 피해자들은 충격을 받거나 공포를 느끼는 등 상당수가 강렬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여 정신적 충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자들은 이런 피해를 당하여도 별 느낌이 없지만 공연음란 피해를 입은 여자들은 정신적 상처와 수치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법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보통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하여 잘 인식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뿐 아니라 내용을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도 극히 적었다. 이것으로 볼 때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바꾼 예와 같이 공연음란 죄에 대해서도 죄명에 대한 대책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공연음란이 무슨 범죄인가 라는 물음에 보통 음란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 까지 전 생애를 살아오면서 공연음란 범죄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응하여 준 피험자 상대로 설문을 한 결과는 ‘한번 있다’가 제일 많았다. 그러나 응답해준 피험자의 평균 연령이 21세이기 때문에 많은 연령대를 조사하지 못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김윤식·박지선 (2011) 연구에서도 피해를 입은 연령대가 10대와 20대가

약 80%정도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의 질문에 대답의 결과 ‘길거리’에서 의도적으로 성기를 노출시키는 사람이 155명(29%)으로 가장 많았고, ‘화가 나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는 가장 적게 나타났다. 공연음란 범죄의 장소는 ‘길거리’에서가 100명(38.6%)로 가장 많았고, ‘학교근처’가 90명(34.7%)로 두 번째 이었다. 김윤식·박지선 (2011) 연구의 결과에서도 249건 중 장소는 길거리가 126건(50.6%)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편의점 등 사업장에서 29건(11.6%)으로 발생한 범죄가 많았다. 이 결과로 볼 때 학교근처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신고를 잘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에서는 등하교 시간에 학교 근처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피해자의 계절별 피해 결과는 여름(6-8월)에 50명(38.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는 가을로 나타났다. 김윤식·박지선 (2011) 연구의 결과 발생율과 비교하여 여름에 95건(38.2%)으로 가장 많은 것 같았으나, 이번 피해자 연구는 가을이 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경찰통계에서는 가을 보다 봄이 약간 높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별 차이는 없었다. 시간별 피해 결과는 오후(12-16시)가 64명(31.4%)가장 많이 나타났고, 오전(08-12시)이 47명(23%)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번 연구결과는 심야(20-24시)에 59건(23.7)로 발생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로 저녁이 49건(19.7%)으로 많았다. 이번 결과는 지난 번 연구와 다르게 나타났는데, 등하교 시간에 공연음란 사건은 주로 신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에 심야나 저녁에는 음란행위를 하는 노출 수위가 높거나 범죄에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들이 심각할 정도로 수

치심을 느꼈던 경우로 생각되고,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공연음란 피해를 당하였을 때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로 처리를 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령별 피해 결과는 10대 170명(77.3%)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명(0.9%)으로 가장 작았다. 지난번 연구에서는 20대가 41건(16.5%)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대가 38건(15.3%)으로 나타났다(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피해자의 연령대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제외). 이번 결과도 경찰통계와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의 평균연령이 21세이고, 30대 이상의 피험자가 적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 없겠지만, 다른 외국의 연구사례와 비슷하게 10대가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거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주변에 몇 명이나 있었는가에 대한 결과는 혼자 있었다는 결과가 82명(38%)가장 많았다. 지난 번 연구의 결과에서는 10명 이상이 있을 때 122건(4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피해자 한 명이 있을 때 71건(28.5%)이었다. 피해자들의 응답에서 의외로 혼자 있을 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는 공연음란의 범죄가 더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음란 범죄를 사법기관에서 경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연음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범행 발생 당시 상황을 조사한 결과는 ‘보행 중’이 132명(61.1%)로 가장 많았고, ‘일하던 중’이 가장 적었다. 지난번 연구 결과에서 길거리 ‘보행 중’이 141건(56.6%)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번 경우는 김윤식·박지선

(2011) 연구와 거의 비슷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공연음란 피해를 당하였을 시 어떤 대응을 하였는가에 대한 결과는 ‘그냥 무시하고 갔다’는 141명(65.3%)으로 가장 높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가에 대한 결과는 신고 안함 204명(94.4%)으로 매우 높았는데 신고한 비율이 12명(5.6%)이었다. 공연음란 범죄에 대해서는 거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성범죄 신고율이 7%정도였는데 그보다 약간 적은 결과이다.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결과는 ‘신고를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63명(30.9%)가장 높은 비율이고, 공연음란 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신고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과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관계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의 특징에 대한 결과에서 피해의 가해자는 주로 남자였다. 외국인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수에 대한 결과도 혼자 가장 많았다. 가해자를 가까이에서 본 경우가 드물어서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지만 술을 마신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나이가 어느 정도 이었는가에 대한 결과는 ‘40대’가 73명(33.8%)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범행수법에 대한 결과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결과는 예가 131명 약 60%가 자위를 하였다고 대답했고, 지난번 연구결과와 비슷했다. ‘차량 안에 음란행위를 하였는가?’에 대한 결과의 대답은 69명(31.9%) 정도였고, 지난번 연구결과는 24건(9.6%)이었다. 이번 결과로 볼 때 차량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고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범죄자의 차량 안에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는 가해자의 공간

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본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남의 공간에서 본것을 신고하기가 꺼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얼굴을 가리고 음란행위를 하였는가에 대한 결과에서 ‘예’라는 대답은 거의 없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말을 건 경우에 대한 결과는 ‘예’라는 대답은 55명(25.5%)이었다. 지난번 연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말을 건 경우는 18건(7.2%)이었는데, 이 번 결과는 지난번 연구 보다는 높았는데, 그 이유는 이번 조사에서는 주로 여자 대학생을 상대로 조사하여 어린 사람에게 더 많이 말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욕설은 거의 안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번 연구와 비슷하였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어, 피해자 폭행, 피해자를 따라 다녔는가에 대한 결과는 거의 없었다.

범행동기 및 특징에 대한 결과에서 범행 동기가 ‘성욕’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가해자가 아는 사이인가 대한 결과는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였다. 노출정도에 대한 결과는 ‘하의를 내림’의 결과가 가장 많았다. 범행 대상이 특정인인가, 불특정 다수인가에 대한 결과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가 많았다.

#### 공연음란 범죄 대처

본 연구 결과들로 공연음란 범죄에 대하여 고려해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성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비율 보다 더 떨어진다.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신고를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대답과 ‘사건이 경미해서’라고 대답한 결과는 이전의 Cox (1988)의 연구 결과에서 언급되었듯이 다른 사람들이 놀림거리로 볼 것을 우려하거나 경찰에 의해 사소한 것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이유 때문

에 오히려 공연음란 범죄의 경우 범죄 피해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미한 성범죄의 범죄자들은 소심한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범죄를 멈추거나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향으로 볼 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준다면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사법기관에서는 신고하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고, 또한 신고를 적게 하는 이유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김윤식·박지선 (2011) 연구에서 경찰에 보고된 경우에는 20대의 사람이 피해를 본 경우가 많고, 또한 야간에 범죄가 발생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10대가 20대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야간에 신고가 된 경우 보다 오후에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범행 당시 여러 명이 같이 있던 경우보다 혼자 있었던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범행 장소에 대해서도 길거리가 많았지만 학교근처와 놀이터를 합하게 되면 비율이 더 높아졌다. 10대의 피해자들이 혼자 있었고, 학교근처나 놀이터 등 많이 있는 곳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이번 연구가 주로 여대생이고 평균연령 21세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번 연구와 다른 결과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번 연구에서도 10대와 20대가 범죄에 노출된 경우가 80%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간과할 수 없는 결과이다. Cox (1988)의 연구에서도 미국의 여자 대학생 총 846명을 대상으로 공연음란 범죄 관련 피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 중 33%가 노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처음 피해를 경험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10세 에서 16세 사이가 가장 많은 43%의 비율을 차지했다. 다른 연구에서는 16세 이전에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57.1%로 가장 많았다(Riordan, 1999). 이런 사례로 볼 때 사법기관이나 경찰에서는 학교폭력과 맞물려서 생각할 때 등하교 시간과 학교근처나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순찰을 강화하는 등에 범죄예방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우려가 되는 것은 공연음란 범죄 행위 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때 변태 성욕을 가지 범죄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혼자 있을 때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때 처음에는 공연음란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다가 더 심각한 성범죄(강제추행 등)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과가 있는 성범죄자들 중에서 공연음란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과 재범의 우려가 있는 성범죄들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 제안

본 연구는 경기도 내에 있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피해자 연구를 한 결과 전국의 전 연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피해를 겪었던 시점이 오래된 경우가 있어 정확하게 응답을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공연음란 범죄에의 일반화 가능성에 있어 한계점을 가진다. 그러나 신고가 거의 되지 않는 성범죄의 실정상 정확한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연음란 피해자를 상대로 자세한 범죄 실태를 조사를 한 것은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처음 시도 된 것이므로 이 연구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번 연구에서 공연음란 범죄에 대한 인식

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공연음란 범죄를 음란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죄명을 바꾸는 문제와 피해자들이 정신적 상처가 큰 것을 감안할 때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연구를 더 해야 할 것이다.

자위행위를 하는 공연음란 범죄자들이 10대의 피해자들이 혼자 있을 때 등하교 시간에 학교근처 및 놀이터 등에서 범죄를 많이 겪고 있지만 거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를 당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게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의 경우도 거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범죄가 음성화가 되고, 또래 집단에서 놀림의 대상이나, 경찰에 신고를 해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여 청소년들이 자살 등 큰 문제로 야기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연음란 범죄도 또한 10대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신고 하지 않고 경미한 범죄라고 생각하게 되면 중대한 성범죄로 이어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공연음란 피해를 입었을 때 정신적인 상처가 매우 큰 것으로 이번 연구에서 밝혀졌고, Riordan (1999)의 연구에서도 공연음란 범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충격을 받거나 공포를 느끼는 등 상당수가 강렬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여 정신적 충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연음란 피해자들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및 피해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윤식·박지선 (2011). 공연음란 범죄의 실태와 대책: 피해자의 특성과 범행 수법을 중심으로. *법정심리학회* 2(2), pp.159-169.
-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Blair, C. D. & Lanyon, R. I. (1981). Exhibitionism: Etiology and treatment. *Psychological Bulletin*, 89, 439-463.
- Cox, D. J. (1988). Incidence and Nature of Male Genital Exposure Behavior as reported by college women,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4, 227-234.
- Cox, D. J. & Daitzman, R. (1979). Behavioral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of male exhibitionism. In M. Hersen, R. M. Eisler, & P. M. Miller(Eds.), *Progress in behavior modifi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Cox, D. J., Tsang, K, & Lee, A (1982). A cross cultural comparison of the incidence and nature of male exhibitionism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Victim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7, 231-234.
- Davis, S. K. & Davis, P. W. (1976). Meaning and Process in erotic offensiveness: An expose of exposes, *Urban Life*, 5, 377-396.
- Evens, D. (1970). Exhibitionism. In C. G. Costello (Ed.). *Symptoms of psychopathology: A handbook*. New York: Wiley
- Feldman, M. P. (1977) Criminal behavior: A psychological analysis. London: Wiley
- Gebhard, P. H., Gagnon, J. H., Pomeroy, W. B. & Christiansen, C. V. (1965). *Sex offenders: An analysis of types*. New York: Harper & Row.

- Gittleson, N. L., Eacott, S. E., & Metha, B. M. (1978). *Victims of indecent exposur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2, 61-66.
- Hackett, T. P. (1971). The psychotherapy of exhibitionists in a court clinic setting, *Seminars in Psychiatry*, 3, 297-306.
- Hendrix, E., & Meyer, R. (1976). Toward more comprehensive and durable client changes: *A case report*.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3, 263.
- Herold, E. S., Mantle, D., & Vemitis, O. (1979). A study of sexual offenses against females. *Adolescence*, 14(53), 65-71.
- Mohr, J. W., Turner, R. E., & Jerry, M. B. (1964). *Pedophilia & exhibitionism: A handbook*. Toronto, Canada: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Rhoas, J. M. Borjes, E. P. (1981). The incidence of exhibitionism in Guatemala and the United State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a, 242-244.
- Rice, M. E., Harris, G. T., & Quinsey, V. L. (2001). Research on the treatment of adult sex offenders. In J. B. Ashford, B. D. Sales, & W. H. Reid (Eds.), *Treating adult and juvenile offenders with special needs*. Washing,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iordan, S. (1999). Indecent exposure: The impact upon the victim's fear of sexual crime,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10, 309-316.
- Rooth, G. (1974) Exhibitionist around the world. *Human Behavior*, 3, 61.
- 1 차원고접수 : 2012. 3. 2.  
 심사통과접수 : 2012. 3. 19.  
 최종원고접수 : 2012. 3. 27.

## The Status of Victims of Indecent Exposure Crime: The Victim's Self-Report Questionnaire Based

Youn-Sik Kim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riminal Psychology

The indecent exposure crime is rarely reported by the victims. The identified indecent exposure crime by police statistic is very small part of actual state. For this reason, questionnaires have been given to the victims in this study. The questionnaires have been analyzed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the crime, the experience at the time of crime, the crime analyses of offenders'. Effective prevention of indecent exposure crime has been pursued from the analyses. 216 people from student victims in University, and random victims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from January to October 2011. As a results, the victims of indecent exposure crime answered as "trauma was serious" the most. However, the victims show little awareness of the crime. Streets are the most common place of the crime in this study. However, combining the rate of crime in school area and playground is higher than those in streets. Summer shows highest rate of the crime out of four season. Afternoon shows highest rate of the crime over the time result. Teenagers are the most common victims from the research by the age. The crime rate was highest when the victim was alone. Walking on a street was the most common situation just before the crime. Only 5.6% of the crime has been reported to police. Evening or night is the most common time of the crime and streets are the most common place of the crime in Y. S. Kim and J. S. Park 's (2011) study. One third of the victims of indecent exposure crime are under 20. The differences of previous study of Y. S Kim and J. S. Park (2011) are as following; First, school area and playground show higher rate of crime. Second, Evening has higher rate of the crime. Third, the highest crime rate has been shown when the victim was alone. At last, teenagers are the most common victims. The crime against teenager victims near school have been rarely reported and it is concerned based on this study. Lastly,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future work have been discussed in the study.

*Key words : indecent exposure, victim characteristics, offending behavior, crime prevention*